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강　　사 : 박상혁

교육일시 : 2024. 06. 04(화),16:30~17:30

목차

1. 노인인권

- 인권이란?
- 노인인권이란?
- 인권 실천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2. 노인학대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의 종류
-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3.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

- 신체구속 사유
- 신체구속 절차

노인인권

1.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인권 실천

- 나이,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와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노인인권

4.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권리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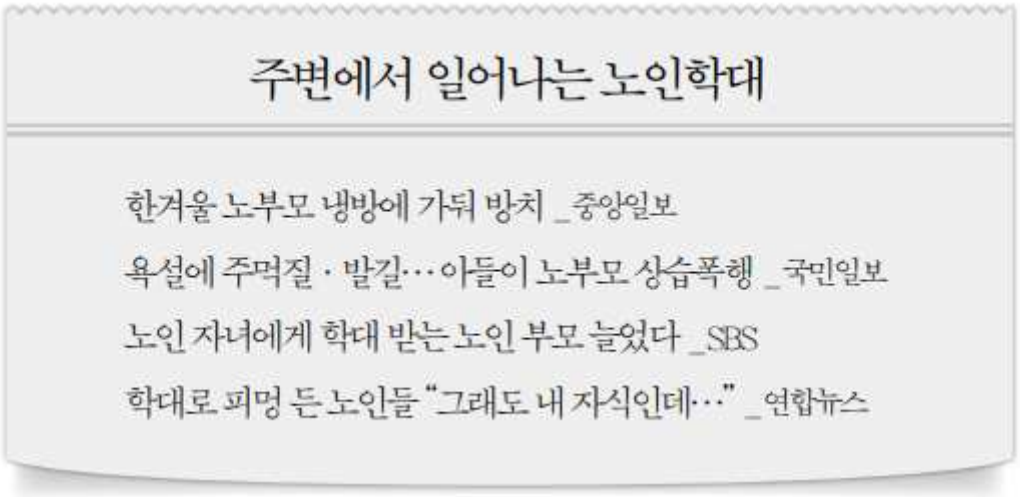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

1.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어떤 행위가 신체적 학대일까요?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일까요?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어떤 행위가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어떤 행위가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어떤 행위가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학대

2. 노인학대의 종류

5)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어떤 행위가 방임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학대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

1) 노인학대의 예방

①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노인학대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

1) 노인학대의 예방

② 종사자의 역할

-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학대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

2) 노인학대의 대응

① 최초 발견

- 어르신을 해당상황에서 분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증거확보(녹음, 상처부위 사진, CCTV 등)
-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 진행.

② 상부에 보고(과장, 국장, 원장)

③ 시설은 피해현장 및 어르신, 가해자, 목격자 등 확인

④ 보호자 상담

⑤ 절차에 따라(인사 위원회 등) 징계. (견책, 감봉, 해고 등)

⑥ 상황이 위중하거나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경우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12 등에 신고.

노인학대

3.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법

3) 횡성군노인전요양원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입구에 비치된 TV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제작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을 매일 송출.
- 주 2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송을 실시.
- 매주 월요일 업무회의 시간 마다 노인학대 예방관련사항 및 존대어 사용에 대해 공지.
- 생활관 내 벽면에 노인학대 신고번호 및 학대 사항에 대해 게시.
- 노인학대 신고함 운영.
- 노인인권교육 : 1년 1회, 4시간(인터넷 강의 6시간)
- 노인학대예방 교육 : 분기별 1회, 1시간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1년 1회, 1시간

신체구속사유와 절차

1. 신체구속사유

- **절박성**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 **비대체성** :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 **일시성**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실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됨

수급자 기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신체구속사유와 절차

2. 신체구속 절차

- 업무일지(요양, 간호, 복지 등)에 관련 내용이 자주 기록.
 (낙상 위험, 공격적인 행동, 꼭 필요한 처치거부)
- 대상 어르신의 사례회의 진행
- 시설장 결재, 의사소견서, 보호자 동의.
 (보호자 동의가 없는 경우 실시할 수 없음.)
- 기록 : 육하원칙에 따라 실시. : 날짜, 시간, 억제대 사용 내용
 (이유, 대상자 반응, 부작용 등), 대상자 이름, 담당자 이름
- 매 30분마다 억제대 상태와 맥박, 피부색, 체온을 관찰한다
- 적어도 2-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관절범위운동과 피부상태 관찰,
 체위변경.
- 적어도 매 8시간마다 억제대가 계속 필요한지를 **재사정**.